부천시 공고 제2026 – 294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의무위반 대상자에게 제6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1. 20.

부천시장

1. 공고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1. 20. ~ 2026. 12. 4.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법적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과태료),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5. 송달대상

연번	임대 사업자	임대사업자 주소	위반 물건지	자진납부 과태료 금액 (본부과 예정 금액)
1	이*호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로 **, ***동 ****호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 ***동 ****호(중동)	2,000,000원 (2,500,000원)

6. 안내사항
   가. 상기 과태료를 2026. 12. 4.(금)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인 2026. 12. 4.까지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 2026. 12. 4.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부과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시 공동주택과(담당자 박준후 ☎032-625-360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